거창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~28

제출연월일	2006. 7. 18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일제시대 잔재로 존치되어온 주상면 1구, 2구 등의 명칭을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살린 명칭으로 변경하여
- 행정리명과 자연마을의 명칭을 일치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명칭의 혼란을 극복하고, 대내적으로 주민화합과 단결을 유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법정리(7개)	현행	변경(안)	법정리(7개)	현행	변경(안)
도평리	도평1구	**도평**(道坪)	성기리	성기1구	**원성기**(元聖基)
	도평2구	**상도평**(上道坪)		성기2구	**정동**(停洞)
연교리	연교1구	**임실**(任實)		성기3구	**송희**(松希)
	연교2구	**연교**(連橋)	거기리	거기1구	**거기**(渠基)
내오리	내오1구	**오산**(鰲山)		거기2구	**장포**(長浦)
	내오2구	**오류동**(五柳洞)		거기3구	**고대**(古垈)
완대리	완대1구	**완수대**(玩水臺)	남산리	남산1구	**원남산**(元南山)
	완대2구	**도동**(道洞)		남산2구	**포덕동**(飽德洞)
	완대3구	**넘터**		남산3구	**보광**(宝光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5항

【지방자치법】 제4조 ⑤동·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다. 기 타

(1)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(2)입법예고(2006. 5. 15~6. 3)결과 : 없음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이장정수조례”를 “거창군 이장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“지방자치법시행령”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별표의 주상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주상면	도평리	2	도평
			상도평
	연교리	2	임실
			연교
	내오리	2	오산
			오류동
	완대리	3	완수대
			도동
			넘터
	성기리	3	원성기
			정동
			송희
	거기리	3	거기
			장포
			고대
	남산리	3	원남산
			포덕동
			보광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
〔별표〕

읍면별	리별	정원	비 고
거창읍	(생략)		
주상면	도평리	2	도평1구, 도평2구
	연교리	2	연교1구, 연교2구
	내오리	2	내오1구, 내오2구
	완대리	3	완대1구, 완대2구, 완대3구
	성기리	3	성기1구, 성기2구, 성기3구
	거기리	3	거기1구, 거기2구, 거기3구
	남산리	3	남산1구, 남산2구, 남산3구
웅양면~가북면	(생략)		

〔별표〕

읍면별	리별	정원	비 고
거창읍	(현행과 같음)		
주상면	도평리	2	도평, 상도평
	연교리	2	임실, 연교
	내오리	2	오산, 오류동
	완대리	3	완수대, 도동, 넘터
	성기리	3	원성기, 정동, 송희
	거기리	3	거기, 장포, 고대
	남산리	3	원남산, 포덕동, 보광
웅양면~가북면	(현행과 같음)		